

의안번호	2218332
의 퇴 인	이성권의원
회 답 일	2026.9.7.
추계번호	26D2136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71억 9,9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46억 7,500만원(연평균 129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통합특별시장 신설 (안 제7조)	(94)	(194)	(199)	(206)	(212)	(904)	(181)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안 제18조)	54	109	112	114	116	504	10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안 제40조)	3,458	6,510	6,710	6,916	7,128	30,722	6,144
차관급 부시장 임명 (안 제45조)	9	19	19	20	20	87	17
소방청 차장 증원 (안 제48조)	92	181	186	193	198	852	170
교육감 감원 (안 제93조)	(99)	(203)	(210)	(216)	(223)	(950)	(190)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132조 등)	1,022	—	73	219	146	1,460	292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64조 등)	20	37	37	37	37	167	33
주민투표 실시 (안 부칙 제1조)	32,737	—	—	—	—	32,737	6,547
합 계	37,199	6,459	6,728	7,077	7,210	64,675	12,935

주 1.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교육감 감소는 재정지출 감소 요인이므로 차감함

3.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통합특별시의 설치)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	의무규정
2	안 제18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지원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자문·조정 등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5조(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	-통합특별시는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40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는 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정원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5	안 제4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함	의무규정
6	안 제48조(소방조직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장의 직급은 소방정감으로 함 -통합특별시소방청 차장은 2명을 둠	의무규정
7	안 제58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하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 이주 수당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67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생략)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⑥ (생략)	
9	안 제68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회의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함	재량규정
10	안 제70조(국가의 포괄적 재정 지원)	—국가는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교통·물류 연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재정지원하여야 함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이 법 제83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1	안 제73조 ~안 제75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을 통합특별시에 교부함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통합특별시 출범 후 1만분의 2,2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통합특별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83조 ~안 제8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발전 및 행정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설치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특별회계 전입금,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및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까지 적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93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둠	의무규정
14	안 제98조, 안 제100조~안 제102조, 안 제104조, 안 제108조, 안 제109조, 안 제115조, 안 제116조, 안 제118조, 안 제120조, 안 제123조, 안 제124조, 안 제126조, 안 제128조~안 제13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경남부산의 민주주의 역사와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과학영재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문화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특성화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나 부지 제공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하여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 마을 조성 및 외국어 사용 환경 조성 사업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량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생활·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통합특별시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소속 기업 등이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는 등의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대학이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	--	--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5	안 제135조, 안 제149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의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며,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계급 구분·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6	안 제150조, 안 제15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인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감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17	안 제162조(기본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경제·산업수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의무규정
18	안 제164조(기본계획심의회)	-제162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경제·산업수도 기본계획심의회를 두며,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19	안 제172조, 안 제174조, 안 제175조, 안 제177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토지채권의 발행금 등으로 함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68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181조, 안 제182조, 안 제185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실증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험시설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험·인증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188조, 안 제190조, 안 제191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교량·항만·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함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철도 등 광역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및 그 밖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익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22	안 제193조, 안 제195조, 안 제196조, 안 제199조,	-국무총리는 5년마다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국가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의 육성 및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200조, 안 제206조, 안 제207조 (우주항공·해양 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장과 공동으로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를 건설·운영하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추진단을 설치하고,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차별 실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무총리와 통합특별시장은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활성화 지원 대책에 관련 기관 유치, 해양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국가는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육성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특별시 내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과 관련된 체험관, 전시관 및 교육시설, 체류형 복합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재배치·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전 부지 확보, 시설 신축·보수 및 그에 따른 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208조, 안 제214조,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라 우주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	의무규정

		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인프라 조성, R&D,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내외 우수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 제217조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 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 등을 포함하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지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인프라 조성, R&D 투자, 인재양성 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구역 내에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우주항공캠퍼스에 우주항공 관련 학과, 연구소, 실습센터 및 교육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우주항공캠퍼스에 둘 수 있으며, 공익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조달함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219조, 안 제221조, ~안 제223조, 안 제225조,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안 제229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천공항의 조속한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공항시설법과 관세법에 따른 국가계획 반영, 국제항의 시설 기준 설치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항만 관리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이양된 경우에도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의 수권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음 -국가는 에어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가덕도신공항 및 그 배후지역에 입주하는 항공 관련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음 -국가가 소유한 부산항만공사의 지분 전부 또는 과반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여 통합특별시 항만공사로 전환하며, 국가는 통합특별시 항만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환일부터 5년간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231조, ~안 제233조, 안 제236조, 안 제239조, ~안 제245조 (과학기술 혁신전담기관 설치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전략산업 및 신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44조)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지역조직 우선 설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지역 조직이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사무소 또는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주항공청장은 해당 분사무소 또는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핵심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연구기관, 대학, 다국적기업 등과의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기반 제조 산업, 기술 및 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문화 융합기술 기반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실증지구 육성 및 규제 완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	--	--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 할 수 있음	
26	안 제249조, 안 제251조 ~안 제258조, 안 제260조, 안 제262조 ~안 제265조, 안 제269조, 안 제271조 ~안 제275조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시·군·구별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군·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 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도체 및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을 반도체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반도체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사항 등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로봇테스트필드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로봇사업자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서 실증을 할 경우 국가는 그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정비·수리·개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시설이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의 함정의 정비·수리·개조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정,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및 소형모듈	의무규정 재량규정

		원자로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및 소형 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 육성,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 실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을 원자력 발전 및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특구의 기반 조성,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우선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랩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연구센터에 대하여,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증사업구역,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	--	--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등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시·군·구별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군·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시·군·구별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 수 있고, 국가는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7	안 제276조, 안 제277조, 안 제283조, 안 제285조 (제조 인공지능)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기반 공정전환 실증단지의 조성,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조 데이터의 수집·활용·분석을 위한 인프라 및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특례 등)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조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조선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용 선박, 특수목적선박 및 조선기자재의 설계, 생산, 유지보수 또는 성능검증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그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용선박 및 특수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국방산업체 및 조선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와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선산업 관련 다음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및 기자재 기술 개발·실증,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조선, 디지털트윈 등 조선 공정의 디지털화·고도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8	안 제290조, 안 제293조 ~안 제294조, 안 제296조 ~안 제300조, 안 제302조 ~안 제303조 (국방특화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등)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방특화클러스터의 구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방 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운영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운영과 수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국방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항만 또는 국가기간 철도망과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함	의무규정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희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29	안 제304조 ~안 제306조, 안 제308조, 안 제312조 ~안 제313조, 안 제317조, ~안 제319조 (가업상속공제 특례 등)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통합특별시에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분담 비율은 국가가 최소 100분의 80을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현금지원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통합특별시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외에 해당 지원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제233조제1항 각 호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가산할 수 있음	재량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개정안 제233조(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2. 우주·항공, 인공지능(AI), 항공MRO,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방위, 로봇, 양자, 미래 모빌리티, 수소,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과 관련된 통합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와 함께 통합특별시로 복귀하는 동반복귀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100분의 20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	---	--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교육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에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외국어 특화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주거, 의료, 교통, 치안, 보육,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인 및 기업 종사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유치 및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조성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설비 도입 및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또는 용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30	안 제322조, 안 제324조 ~안 제326조 (글로벌 금융거점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국제적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중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금융 분야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시책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정되는 금융특구의 조성 및 지원, 그 밖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특별시장은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특구 내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융특구 내 관련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1	안 제332조, 안 제333조, 안 제334조, 안 제335조, 안 제336조, 안 제338조, 안 제339조, 안 제340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통합특별시장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현황 및 산업구조 분석 등의 기초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함 -통합특별시는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며, 정부는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시·군·구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을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그 외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및 세제상의 지원 조치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재량규정
32	안 제342조, ~ 제347조, 안 제353조 ~안 제354조, 안 제358조, 안 제361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 례 등)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탄소 포집·이용·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개발·실증, 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및 에너지 전환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발전지구 지정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발전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히트펌프 및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추진하는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의 보급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다른 지역의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수소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 사회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하여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수소 특화 단지에 대하여 기반 조성, 수소산업 체계 육성,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3	안 제367조, 안 제368조, 안 제370조 ~안 제374조,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376조, 안 제378조 ~안 제379조, 안 제381조, 안 제383조 (농업·농촌 발전 기금 설치·운용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재해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남부산 농업재해 보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청년 농어업인의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조정된 청년 농어업인 연령에 맞추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지구의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구성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국가 식품수출클러스터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재량규정
--	--	---	-------------

		-통합특별시장은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4	안 제387조, 안 제388조, 안 제391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할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등을 지정·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397조, 안 제398조,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촉진 등)	-정부는 통합특별시에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는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고도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 실증 및 검증, 표준 및 인증, 규제 특례, 창업 및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 공공 인프라(시험 생산, 공유 장비, 식품 안전 및 위해 평가, 스마트 제조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401조 ~안 제405조, 안 제408조, ~안 제411조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인구부양, 돌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지역돌봄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재량규정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7	안 제412조, 안 제416조 ~안 제421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의료재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합특별시 관할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특별시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재량규정

38	안 제422조, 안 제424조 ~안 제425조, 안 제427조 ~안 제42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전용 주차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또는 지하 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9	안 제436조, 안 제440조, 안 제444조, 안 제445조 (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이 통합행정권역에 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보전·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농촌·해양·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40	안 제452조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한 특 례)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른 이전사업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4.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무규정
41	안 제458조, 안 제459조, 안 제464조 (대도시권 광역 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설치 및 건설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를 보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고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연계되는 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등의 사업을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가 계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함	재량규정
42	안 제466조, ~안 제469조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지원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사, 인터체인지 신설 등의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	재량규정

		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통합특별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을 신설·운영함	
43	안 제475조, 안 제480조, 안 제483조 ~안 제485조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 상용화 및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율주행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자율주행 실증, 상용화 및 공공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일부 지역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기반시설 구축, 실증사업, 서비스 확산 및 운영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실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의 결과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도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4	안 제486조, 안 제492조, 안 제49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혁신 도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500조, 안 제501조, 안 제507조 (인구감소지역등 에 대한 지원 방 식 자율성 강화 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5 안 제508조 ~안 제510조, 안 제512조 ~안 제514조, 안 제516조, 안 제520조, 안 제522조, 안 제523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운영 및 주민의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가야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이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의무규정

	안 제527조, (문화예술의 진 흥 등)	가야문화 관련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 축제가 육 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시설이 집적된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문화 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가야문화의 보존·전승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통합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립가야민속촌을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는 역사문화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하 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 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 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 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 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 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 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 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	---------------------------------------	--	-------------

46	안 제531조 안 제536조, 안 제538조, 안 제539조, 안 제540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시 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국제회의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전시 컨벤션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7	안 제546조, 안 제547조, 안 제549조, 안 제550조, 안 제560조 ~안 제562조, 안 제564조 ~안 제566조, 안 제571조, 안 제575조, 안 제577조 (남해안종합개발 청의 설치 등)	-정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여야 함 -남해안청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둠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류, 가스, 연탄 및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필수 생필품 등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및 여객선·화물선 적재 화물의 운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른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회계 세입금으로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한 경우 주민 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시설 정비, 산업 진흥 및 자립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도서 지역에 문화예술의 섬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함 -국가는 섬 발전 및 글로벌 국제해양레저도시 육성을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분원을 통합특별시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섬 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 단지와 교육 시설, 휴양 및 편의 시설, 주거 시설 등을 갖춘 지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시행하는 해양자원 활용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해양관광 및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시민의 수상레저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주체에게 예산 지원, 국유재산 사용 및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8	안 제580조 ~안 제583조, 안 제593조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재량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 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49	안 제600조, 안 제601조, 안 제604조, 안 제611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등)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청정 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 둠(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 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 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갯벌 등의 지역을 경남부산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갯벌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지역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계기금 등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0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통합특별시의 설치)	○	
2	안 제18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3	안 제25조(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	×	○ 제정안은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40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	
5	안 제4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6	안 제48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7	안 제58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비용, 이주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8	안 제67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실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 의해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완화되어 주민투표 실시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서명인 요건 및 이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횟수 증가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68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	○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기 곤란함

10	안 제70조(국가의 포괄적 재정 지원)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재정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73조 ~안 제75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2	안 제83조~안 제8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남 부산통합특별시 제정 설치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추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3	안 제93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	
14	안 제98조, 안 제100조~안 제102조, 안 제104조, 안 제108조, 안 제109조, 안 제115조, 안 제116조, 안 제118조, 안 제120조, 안 제123조, 안 제124조, 안 제126조, 안 제128조~안 제13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5	안 제135조, 안 제149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등)	×	○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계급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150조, 안 제15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미대상)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담당관 및 청렴담당관을 두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렴기획담당, 감사총괄담당, 회계감사담당 등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제정안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감사담당 조직과 인력의 재조정을 통해 제정안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7	안 제162조(기본계획의 수립)	O	
18	안 제164조(기본계획심의회)	O	
19	안 제172조, 안 제174조, 안 제175조, 안 제177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0	안 제181조, 안 제182조, 안 제185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21	안 제188조, 안 제190조, 안 제191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22	안 제193조, 안 제195조, 안 제196조, 안 제199조, 안 제200조, 안 제206조, 안 제207조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O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3	안 제208조, 안 제214조~안 제217조 (우주항공·해양물류산업 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24	안 제219조, 안 제221조~안 제223조, 안 제225조, 안 제229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O	(신공항관리위원회 설치)
		×	(재정적 지원 관련) ○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임대료 감면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으며, 가덕도신공항운영공사 출자금 규모 등 세부적인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25	안 제231조~안 제233조, 안 제236조, 안 제239조~안 제245조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등)	O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26	안 제249조, 안 제251조~안 제258조, 안 제260조, 안 제262조~안 제265조, 안 제269조, 안 제271조~안 제275조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 는데 한계가 있음
27	안 제276조, 안 제277조, 안 제283조, 안 제285조 (제조 인공지능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 는데 한계가 있음
28	안 제290조, 안 제293조~안 제294조, 안 제296조~안 제300조, 안 제302조~안 제303조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에 관 한 특례 등)	O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규모, 세금 감면, 보 조금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현 시점에서 합 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재정소요 추계에 한계 가 있음
29	안 제304조~안 제306조, 안 제308조, 안 제312조~안 제313조, 안 제317조~안 제319조 (가업상속공제 특례 등)	O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규모, 용자 등의 세 부적인 내용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30	안 제322조, 안 제324조~안 제326조 (글로벌 금융거점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1	안 제332조, 안 제333조, 안 제334조~안 제336조, 안 제338조~안 제340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 립 등)	O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 관련 기초 조사 실시 관련)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2	안 제342조~ 제347조, 안 제353조~안 제354조, 안 제358조, 안 제361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 는데 한계가 있음

33	안 제367조, 안 제368조, 안 제370조~안 제374조, 안 제376조, 안 제378조~안 제379조, 안 제381조, 안 제383조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운 용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선진화 및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이 수립 전이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 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4	안 제387조, 안 제388조, 안 제391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의 세부적인 내용 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5	안 제397조, 안 제398조,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촉진 등)	0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 실시)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의 세부적인 내용 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6	안 제401조~안 제405조, 안 제408조~안 제411조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시행할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내용을 현 시점에서 예 측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추 계에 한계가 있음
37	안 제412조, 안 제416조~안 제421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에 따라 설치될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이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38	안 제422조, 안 제424조~안 제425조, 안 제427조~안 제42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례 등)	0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사용료 감면, 기금 설치의 재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39	안 제436조, 안 제440조, 안 제444조, 안 제445조 (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등)	0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정안은 재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 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0	안 제452조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 례)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부재산 가액이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추 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1	안 제458조, 안 제459조, 안 제46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에 관한 특례 등)	×	○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 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 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2	안 제466조~안 제469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안은 재정 지원, 사용료 감면 등의 세부적인 내용 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3	안 제475조, 안 제480조, 안 제483조~안 제485조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자 재 정지원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안은 재정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 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4	안 제486조, 안 제492조, 안 제496조, 안 제500조, 안 제501조, 안 제507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방식 자율성 강화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안은 재정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 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5	안 제508조~안 제510조, 안 제512조~안 제514조, 안 제516조, 안 제520조, 안 제522조, 안 제523조, 안 제527조, (문화예술의 진흥 등)	O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안은 재정 지원,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 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6	안 제531조, 안 제536조, 안 제538조~안 제540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안은 재정 지원, 출연금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 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7	안 제546조, 안 제547조, 안 제549조, 안 제550조, 안 제560조~안 제562조, 안 제564조~안 제566조, 안 제571조, 안 제575조, 안 제577조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O	(남해안발전종합계획·해양레저 관광 및 수상레저 활 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해안발전위원회·섬발전심 의위원회 운영 관련)
		×	○ 남해안종합개발청에 대하여는 조직 및 인력계획,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현 시점에 합리적인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새만금개발청 신설 시 예산 및 인력 현황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안은 재정 지원,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8	안 제580조~안 제583조, 안 제593조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O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9	안 제600조, 안 제601조, 안 제604조, 안 제611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등)	O	(갯벌관리위원회 운영)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50	부칙 제1조(시행일)	O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통합특별시장 관련) 안 제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경우, 기존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사의 직위가 없어지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장의 직위가 신설되므로, 이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감소 추정치를 재정소요 감소액으로 추계함
 - 통합특별시장 및 현행 시·도지사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의 교육감 연봉액¹⁾을 준용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함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관련) 안 제1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²⁾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1억 275만원임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연봉은 154,932천원, 광역시장·도지사 연봉을 150,467천원으로 규정

2)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안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증원될 수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소요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통합특별시 의회의원 정수는 현 부산광역시의원과 경상남도의원 수를 합한 수로 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법상 가능한 최대 인원을 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제정안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58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제정안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추정

(단위: 명)

구분	의원 정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통합특별시)	증원 인원
부산광역시	48	24	—	—
경상남도	68	34	—	—
통합특별시	116	58	116	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³⁾」에 근거하여 시·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가정
- 통합특별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인 72,157천원⁴⁾을 적용하고, 수당으로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산하며, 연봉과 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한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	57,708

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차관급 부시장 관련) 안 제45조는 부시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고 있어 현행과 비교할 때 인건비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인건비 추가소요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현행 부산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의 국가공무원으로, 연봉 및 수당은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연봉과 수당을 준용하고, 개정안에 따른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연봉액⁵⁾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함
- 추정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추가소요를 추정함

□ (소방 조직 관련) 안 제48조는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장을 소방정감으로 하도록 하며, 차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현행과 비교하여 인건비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인건비 추가소요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현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은 소방정감이며,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감임
- 제정안은 통합특별시 소방청장을 소방정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직급과 동일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해당 인건비 추가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차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를 참고하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하고, 부분부장 2인을 각각 소방감과 소방준감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개정안에 따른 소방청 차장 2명을 각각 소방감과 소방준감으로 두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행과 비교할 때 소방준감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소방준감 1명 증가에 따른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연봉을 150,467천원으로 규정

- 소방준감의 연봉 및 수당은 소방청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준감의 연봉과 수당을 준용하여 추정하며, 보수액에 따른 기관부담금, 소방준감 1명에 대한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소방준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소방청 2026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8.8%를 적용하여 추정
- 증원되는 인력의 업무공간은 기존 소방청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교육감 1명 감소 관련) 안 제93조는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각 1명씩 선출되는 교육감이 제정안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통합되는 경우 1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교육감 1명의 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 및 기관부담금 감소 추정치를 재정소요 감소액으로 추계함
- 현행 교육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연봉액⁶⁾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관련) 안 제132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 안 제162조에 따른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안 제193조에 따른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안 제244조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290조에 따른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안 제31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332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안 제333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안 제398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안 제422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안 제440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안 제508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 안 제547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종합계획 및 안 제577조에 따른 해양레저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부산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추계함
- 「제4차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2025)」 연구용역비 49백만원,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수립(2025)」 연구용역비 71백만원, 「부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통합특별시 교육감 연봉을 150,467천원으로 규정

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2025)」 연구용역비 88백만원의 평균액 69백만원을 2025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계획별 수립주기는 다음과 같이 가정
 -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4년(개정안)
 - －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 남해안발전종합계획: 5년(개정안)
 - －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해양레저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 진흥 기본계획: 5년
 - －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 3년(개정안)
 -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3년⁷⁾
 - －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2년(개정안)
- 위 수립주기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2년에 수립,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1년에 수립,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는 2028년, 2030년, 2032년에 실시하며, 그 외 기본계획 수립은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64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 안 제219조에 따른 신공항관리위원회, 안 제550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 안 제562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안 제580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및 안 제601조에 따른 갯벌관리위원회 관련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64조의 기본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 그 외 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심의회와 갯벌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 이 중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가정
- 신공항관리위원회와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 이 중 민간위원은 8명으로 가정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주기 3년을 참고하여 가정함

- 남해안발전위원회는 전체 위원 30명으로 하고,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12명으로 가정
-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전체 위원 수를 25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수는 15명으로 가정
-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주민투표 실시 관련) 제정안 부칙은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으나, 본 추계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됨을 전제로 함
 - 주민투표 실시 비용은 가장 최근 실시된 주민투표의 사례를 토대로 주민투표인수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을 추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를 기초로 주민투표인수를 추정하여 추계
- 제정안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통합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감소 외 인력·조직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채용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⁸⁾을 적용
-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 부칙에 따라 추계 시점은 2028년으로 하고,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3.5	3.0	3.0	3.0	3.0	3.0	3.0
공무원 채용 기관부담 요율(%)	13.004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3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886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5,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통합특별시장 신설(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현행에 비해 시·도지사가 2명 감소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재정소요 감소액을 추정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통합특별시장 및 현행 시·도지사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의 교육감 연봉액⁹⁾을 준용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기관부담금을 추계
 - 기본경비 감소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보수) 제정안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되고 시·도지사가 폐지되는 경우, 보수 감소액은 2028년 8,300만원 등 5년간 총 7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통합특별시장 및 시·도지사 1인당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수액
통합특별시장	연봉	154,932
	수당	17,280
	합계	172,212
시·도지사	연봉	150,467
	수당	13,800
	합계	164,267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 1명 전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연봉은 154,932천원, 광역시장·도지사 연봉을 150,467천원으로 규정

[표 4] 통합특별시장 신설 및 시·도지사 폐지에 따른 보수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구분	1인당 보수 (a)	인원 (b)	연간 총액 (a×b)						
통합특별시장 (신설)	172	1	172	91	188	194	200	206	879
시·도지사 (폐지)	164	(2)	(329)	(174)	(359)	(370)	(381)	(392)	(1,676)
보수 감소액			(156)	(83)	(171)	(176)	(181)	(187)	(798)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8년 보수는 6개월분만 반영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감소액은 2028년 1,1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700만원으로 예상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 적용

[표 5] 통합특별시장 신설 및 시·도지사 폐지에 따른 기관부담금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관부담금	(11)	(23)	(24)	(24)	(25)	(107)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신설되고 시·도지사가 폐지되는 경우, 재정지출 감소액은 2028년 9,400만원 등 5년간 총 9억 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통합특별시장 신설 및 시·도지사 폐지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83)	(171)	(176)	(181)	(187)	(798)
기관부담금	(11)	(23)	(24)	(24)	(25)	(107)
합 계	(94)	(194)	(199)	(206)	(212)	(904)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안 제18조)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적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¹⁰⁾, 각 시·도별 평균 운영예산은 1억 275만원이며,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안 제18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4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5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지원위원회 등 설치·운영	54	109	112	114	116	504

주 1. 시행일이 2028년 7월 1일이므로, 2028년 소요경비는 연간 경비의 2분의 1임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40조)

- (보수)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시행 이후 통합특별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58명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평균 연봉액을 적용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3억 6,200만원 등 5년간 총 227억 1,900만원으로 추계됨

10)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표 8]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수액
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봉	72,157
	수당	4,620
	합계	76,777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 1명 전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9]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구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정책지원 전문인력	77	58	4,453	2,362	4,866	5,012	5,162	5,317	22,719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8년 보수는 6개월분만 반영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억 1,200만원 등 5년간 총 30억 4,600만원으로 예상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 적용

[표 10]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관부담금	312	646	671	696	721	3,046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20.5%를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억 8,400만원 등 5년간 총 46억 5,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본경비	484	998	1,027	1,058	1,090	4,657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2028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억원으로 예상됨

[표 12]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자산취득비	300	-	-	-	-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증원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4억 5,800만원 등 5년간 총 307억 2,2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3]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2,362	4,866	5,012	5,162	5,317	22,719
기관부담금	312	646	671	696	721	3,046
기본경비	484	998	1,027	1,058	1,090	4,657
자산취득비	300	-	-	-	-	300
합 계	3,458	6,510	6,710	6,916	7,128	30,72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차관급 부시장 인건비 관련(안 제45조)

□ 제정안에 따른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현행과 비교하여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그 직급을 차관급으로 두도록 하여 현행과 비교하여 인건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연봉액¹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고, 현 부시장의 연봉 및 수당은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연봉과 수당을 참고하여 추정함

－ 기본경비 추가소요는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또한 고려하지 않음

□ (보수) 제정안에 따라 부시장 4명을 차관급으로 하는 경우, 보수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 800만원 등 5년간 총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부시장 1인당 보수 증가액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수액
현행 부시장 (고위공무원단)	연봉	149,088
	수당	11,400
	합계	160,488
개정안에 따른 부시장 (차관급)	연봉	150,467
	수당	13,800
	합계	164,267
보수 증가액		3,779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 1명 전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연봉을 150,467천원으로 규정

[표 15] 부시장 차관급 임명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구분	1인당 보수 증가액 (a)	인원 (b)	연간 총액 (a×b)						
부시장	4	4	15	8	17	17	18	18	77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8년 보수는 6개월분만 반영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00만원 등 5년간 총 1,000만원으로 예상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 적용

[표 16] 부시장 차관급 임명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관부담금	1	2	2	2	2	10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부시장 4명을 차관급으로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900만원 등 5년간 총 8,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7] 부시장 차관급 임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8	17	17	18	18	77
기관부담금	1	2	2	2	2	10
합 계	9	19	19	20	20	87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소방청 설치 관련(안 제48조)

- (보수)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에 따라 소방준감으로 임명하는 소방청 차장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소방청의 2026년도 예산 각 목명세서를 기준으로 보수를 추정하면,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200만원 등 5년간 총 6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8] 소방청 차장 1인당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수액
소방청 차장 (소방준감)	연봉	127,492
	수당	8,400
	합계	135,892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 1명 전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9]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소방청 차장(소방준감)	72	148	153	158	162	693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8년 보수는 6개월분만 반영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900만원 등 5년간 총 9,300만원으로 예상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 적용

[표 20]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관부담금	9	20	20	21	22	93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소방청 2026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8.8%를 보수액에 적용하면,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00만원 등 5년간 총 6,100만원으로 예상됨

[표 21]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본경비	6	13	13	14	14	61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 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2028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00만원으로 예상됨

[표 22]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자산취득비	5	-	-	-	-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소방청 차장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9,200만원 등 5년간 총 8억 5,200만원으로 예상됨

[표 23] 소방청 차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72	148	153	158	162	693
기관부담금	9	20	20	21	22	93
기본경비	6	13	13	14	14	61
자산취득비	5	-	-	-	-	5
합 계	92	181	186	193	198	85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교육감 감원 관련(안 제93조)

□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현행에 비해 교육감이 1명 줄어들게 되므로, 교육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재정소요 감소액을 추정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현행 교육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연봉액¹²⁾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기관 부담금을 추계
 - 기본경비 감소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보수) 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1명 줄어드는 경우, 보수 감소액은 2028년 8,700만원 등 5년간 총 8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4] 교육감 1인당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수액
교육감	연봉	150,467
	수당	13,800
	합계	164,267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 1명 전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5] 교육감 1명 감소에 따른 보수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교육감	(87)	(179)	(185)	(190)	(196)	(838)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8년 보수는 6개월분만 반영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감소액은 2028년 1,1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1,200만원으로 예상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 적용

1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통합특별시 교육감 연봉을 150,467천원으로 규정

[표 26] 교육감 1명 감소에 따른 기관부담금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기관부담금	(11)	(24)	(25)	(26)	(27)	(11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교육감 1명이 줄어드는 경우, 재정지출 감소액은 2028년 9,900만원 등 5년간 총 9억 5,000만원으로 예상됨

[표 27] 교육감 1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보수	(87)	(179)	(185)	(190)	(196)	(838)
기관부담금	(11)	(24)	(25)	(26)	(27)	(112)
합 계	(99)	(203)	(210)	(216)	(223)	(950)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각종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관련(안 제132조, 안 제162조, 안 제193조, 안 제244조, 안 제290조, 안 제312조, 안 제332조, 안 제333조, 안 제398조, 안 제422조, 안 제440조, 안 제508조, 안 제547조 및 안 제577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금액을 적용함
 - 연구용역비 평균금액 6,900만원을 2025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8년 7,3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가정
 - 수립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2년에 수립,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1년에 수립,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는 2028년, 2030년, 2032년에 실시하며, 그 외 기본계획 수립은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0억 2,200만원 등 5년간 총 14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8] 각종 계획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 제132조)	73	—	—	—	73	146
경제·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안 제162조)	73	—	—	—	—	73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안 제193조)	73	—	—	—	—	73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안 제244조)	73	—	—	73	—	146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안 제290조)	73	—	—	—	—	73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312조)	73	—	—	—	—	73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안 제332조)	73	—	—	—	—	73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안 제333조)	73	—	—	73	—	146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안 제398조)	73	—	73	—	73	219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422조)	73	—	—	73	—	146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안 제440조)	73	—	—	—	—	73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 (안 제508조)	73	—	—	—	—	73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안 제547조)	73	—	—	—	—	73
해양레저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 진흥 기본계획(안 제577조)	73	—	—	—	—	73
합 계	1,022	—	73	219	146	1,4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4조, 안 제219조, 안 제550조, 안 제562조, 안 제580조 및 안 제601조)

□ 추계의 전제에 따른 각 위원회 민간위원 수는 다음과 같음

- 안 제164조 기본계획심의회의, 안 제550조 남해안발전위원회, 안 제601조 갯벌관리위원회: 12명
- 안 제219조 신공항관리위원회, 안 제562조 섬발전심의위원회: 8명
- 안 제580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 15명

□ 안 제164조의 기본계획심의회의는 연간 1회, 그 외 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지급단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단, 제정안은 2028년 7월 1일 시행이므로, 2028년 회의 실시 횟수는 모든 위원회에서 1회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000만원 등 5년간 1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9]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본계획심의회의(안 제164조) (12명, 연 1회)	3.6	3.6	3.6	3.6	3.6	18
신공항관리위원회(안 제219조) (8명, 연 2회)	2.4	4.8	4.8	4.8	4.8	21.6
남해안발전위원회(안 제550조) (12명, 연 2회)	3.6	7.2	7.2	7.2	7.2	32.4
섬발전심의위원회(안 제562조) (8명, 연 2회)	2.4	4.8	4.8	4.8	4.8	21.6
산림복지심의위원회(안 제580조) (15명, 연 2회)	4.5	9	9	9	9	40.5
갯벌관리위원회(안 제601조) (12명, 연 2회)	3.6	7.2	7.2	7.2	7.2	32.4
합계	20	37	37	37	37	167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8년 모든 위원회 회의 실시 횟수는 1회로 가정

2.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 주민투표 실시(안 부칙 제1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비용은 가장 최근 실시된 주민투표의 사례를 토대로 주민투표인수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을 추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를 기초로 주민투표인수를 추정하여 추계
- 최근에 실시되었던 3건의 주민투표(경남 거창(2019년), 경상북도 군위·의성(2019년), 충남 천안(2020년))의 투표인수와 주민투표 실시비용을 참고할 때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은 5,943원임

[표 30] 주민투표 실시비용

투표일	지역	주민투표명	투표인수*(명)	주민투표 실시비용(천원)	1인당 주민투표 실시비용(원)
2019.10.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요구서 제출	53,186	430,000	-
2020. 1.21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	70,614	636,000	-
2020. 6.26	충청남도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사업추진 찬반	130,445	445,000	-
합계			254,245	1,511,000	5,943

* 투표인수 = 투표자수(사전투표자, 거소투표자 포함) + 기권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인구수와 주민투표인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 주민투표인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에 따른 전체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 85.7%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이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표 31] 지방자치단체 인구 현황 및 주민투표인수 추정

시·도	시·도 인구수(명, a)	주민투표인수(명, b=a×0.857)
부산광역시	3,232,370	2,770,141
경상남도	3,195,351	2,738,416
합계	6,427,721	5,508,557

주. 인구수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6년 6월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27억 3,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32] 주민투표 실시비용 추정: 2028년

시·도	주민투표인수(명, a)	주민투표 실시비용(백만원, c=a×b×5,943원)
부산광역시·경상남도	5,508,557	32,737

주. 최근 실시된 3건의 주민투표의 주민투표인수 1인당 평균 주민투표 실시비용 5,943원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차.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71억 9,9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46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통합특별시장 신설 (안 제7조)	(94)	(194)	(199)	(206)	(212)	(904)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안 제18조)	54	109	112	114	116	504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안 제40조)	3,458	6,510	6,710	6,916	7,128	30,722
차관급 부시장 임명 (안 제45조)	9	19	19	20	20	87
소방청 차장 1명 증원 (안 제48조)	92	181	186	193	198	852
교육감 1명 감소 (안 제93조)	(99)	(203)	(210)	(216)	(223)	(950)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132조 등)	1,022	—	73	219	146	1,460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64조 등)	20	37	37	37	37	167
주민투표 실시 (안 부칙 제1조)	32,737	—	—	—	—	32,737
합 계	37,199	6,459	6,728	7,077	7,210	64,675

주 1.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통합특별시장 신설에 따른 시·도지사 폐지 및 교육감 감소는 재정지출 감소 요인이므로 차감함

3.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참고자료] 새만금개발청 예산 및 인력 현황(안 제546조 남해안종합개발청 관련)

(자료: 새만금건설청 제출자료 및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새만금개발청 개청 초기 예산 현황

- '13년 개청 당시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배정된 예비비 70억 원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는 형태로 배정됨
 - 개청일자가 9월임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4개월분으로 배정
 -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청의 설치에 관한 비용은 새만금개발청 예산으로 편성·집행한 바 없음

[2013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70
청 설치 비용		-
운영비	기본경비	16
	행정정보망 구축	28
	소계	44
사업비	투자유치지원	8
인건비		18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 2014년도 예산 편성 현황

- 2014년도 예산(안)은 '13.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확정('14.1월)
 - 동서도로 건설 사업*은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 이관
 - ('14)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비(45), 기본조사설계비(6)를 포함, 총 51억원

[2014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192
■청 설치 비용		-
■운영비	기본경비	27
	행정능률향상	1
	새만금위원회 운영	1
	소계	29
■사업비	동서도로 건설	51
	투자유치지원	25
	정책연구	8
	소계	85
■인건비		78

□ 2015년도 예산 편성 현황

- 2015년부터 「국가재정법」 상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예산 확보
- * (부처) 예산(안) 요구(~5.31) → (기획재정부) 편성(~9.2.) → (국회) 심의·확정(~12.2.)
 - 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국토부), ②국제관광단지 개발** (문체부) 사업 추가 이관(이후 개청 관련 재정사업 이관은 없음)
 - * (기간) '13~'18/(총사업비) 239억원/ (규모) 배수지 1개소(32천톤), 관로(4km)/ (내용) 오식도배수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연결관로 구축/ (방식) 보조(국비 100%)
 - ** (기간) '13~계속/ (내용) 새만금 상설공연 지원, 생태공원 3개소(군산2, 김제1) 조성/ (방식) 보조(국비 50%)

[2015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681
청 설치 비용		-
운영비	기본경비	29
	행정능률향상	1
	행정정보망 구축	4
	새만금위원회 운영	1
	소계	35
사업비	동서도로 건설	430
	재난안전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40
	국제관광단지 개발	16
	국가별 경험특구 기반조성	50
	투자유치지원	19
	새만금 사업 홍보	2
	정책연구	8
	소계	567
인건비		79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2,028
■운영비	기본경비	48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9
	새만금투자유치지원	24
	새만금개발정책연구	9
	행정정보망 구축	11
	소계	100
■사업비	새만금 상수도시설건설사업	34
	새만금 종합사업 관리 기술지원	15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630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54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17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5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44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관리	1
	소계	1,800
■인건비		127

□ 새만금개발청 정원 : 138명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 작성)

합계	정무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38	1	4	3	20	44	44	19	1	2